

구미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김영태 의원

# 구미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 (김영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김영태 의원(1인)

찬 성 자: 김영길·김정도·박세채·안주찬  
이상호·이정희·추은희 의원(7인)

### 1. 제안이유

구미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의 문화 기반 조성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시민의 여가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이스포츠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이스포츠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바.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 3. 조례안: 붙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  
제8조

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나. 부서검토: 문화예술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 구미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해 시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
3.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
4.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방안
5.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방안
6. 이스포츠 관련 국내·외 대회 등 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

7.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스포츠 진흥 사업)**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
3.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운영
4.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권익향상 지원 사업
5. 이스포츠 관련 홍보·마케팅
6.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지원
7.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이스포츠 교류 및 협력
8. 게임에 대한 인식개선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대회 개최 지원
2.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
3. 시민 및 각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

대

4. 이스포츠 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사업 교류

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미시의 출자·출연 기관이나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자문위원회 설치·구성)**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제4조 및 제5조와 관련된 내용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미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게임산업과 이스포츠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게임산업과 이스포츠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선수

3. 구미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타 지방자치단체 및 게임산업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 적극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력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전문 이스포츠”란 이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 이스포츠”란 여가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이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이스포츠 선수”란 이스포츠 단체의 정하여진 바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이스포츠 단체”란 이스포츠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

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금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이스포츠 단체, 그 밖에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가 이스포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이스포츠시설을 구축하거나 기존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시설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의 영업소를 입지조건 및 시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이스포츠시설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이스포츠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⑥ 이스포츠시설의 지원 범위 및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장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스포츠 종목의 다양화 및 이스포츠의 체계화
2. 생활 이스포츠 대회 등 국내 이스포츠 대회의 활성화

# 검 토 의 건 서

부서명 : 문화예술과

조 례 명

구미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 □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 □ 주요 사항

-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3조)
- 이스포츠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이스포츠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이스포츠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 이스포츠 관련 기관·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 검토 결과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의 근거 마련으로 구미시 이스포츠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이스포츠 관련 자문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으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 조례 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이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으로 구미시 이스포츠 산업 활성화 기대
- 소요예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문 제 점: 해당없음

# 구미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위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이며,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움

### 4. 작성자

- 문화예술과 문화산업팀 이주호(☎054-480-6623)